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90
------------	----

제출연월일 : 2007. 1. 12.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제3항).
- 나.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관직을 지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6. 12. 1 ~ 12. 21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으로 한다.

제2조중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로, “선정되어 영 농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선정된 농업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중 “기금” 을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및 제12조중 “심의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경제과학국장

3. (사)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임원

4. 기금운용 또는 농업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7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중 “농정과장”을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중 “시장”을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과학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업유통과장
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

제15조중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로 한다.

제2조중 “농업 · 농촌기본법”을 “「농업 · 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③(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대전광역시</u> <u>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u>(이하 “<u>기금</u>”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대전광역시</u> <u>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후계농업경영인</u>”이라 함은 <u>대전광역시</u>(이하 “<u>시</u>”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u>대전 광역시</u> ----- ----- ----- <u>선정된</u> <u>농업인</u>-----</p>
<p>제3조(기금의 조성) <u>기금</u>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u>의 출연금 2.~ 3. (생략) 	<p>제3조(기금의 조성) <u>대전광역시</u> <u>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u>(이하 “<u>기금</u>”이라 한다)----- 1. <u>대전광역시</u>----- 2.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관리위원회) <u>기금</u>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전광역시</u> <u>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회</u>(이하 “<u>심의회</u>”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u>대전광역시</u> <u>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u>심의위원회</u>”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6조(기능) <u>심의회</u>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금운용계획</u>에 관한 사항 2. <u>기금결산</u>에 관한 사항 3. 기타 <u>기금운용</u>에 필요한 사항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구성 등) ① <u>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인</p> <p>2. 시 경제과학국장</p> <p>3. (사)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위원</p> <p>4.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농업인</p> <p>5. 농업·농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p> <p>④ <u>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u></p>	<p>제7조(구성 등) ① <u>심의위원회</u> -----</p> <p>-----</p> <p>-----</p> <p>②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p> <p>2. 경제과학국장</p> <p>3. (사)한국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위원</p> <p>4. 기금운용 또는 농업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p> <p>④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p>
<p>제8조(위원장) ① <u>위원장은 <u>심의회</u>를 대표하고 <u>심의회</u>의 사무를 통괄한다.</u></p> <p>② (생략)</p>	<p>제8조(위원장) ①----- <u>심의위원회</u>-----</p> <p>----- <u>심의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회의) ① <u>위원장은 <u>심의회</u>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② <u>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9조(회의) ①----- <u>심의위원회</u>-----</p> <p>-----</p> <p>② <u>심의위원회</u>-----</p> <p>-----</p>
<p>제10조(간사 등) <u>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u>농정과장</u>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u></p>	<p>제10조(간사 등) <u>심의위원회</u>-----</p> <p>-----</p> <p>----- <u>농업유통과장</u>-----</p> <p>-----</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사업 및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4. (생략)</p> <p>5. 기타 <u>시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생략)</p> <p>제12조(기금의 지원 결정)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u>심의회의</u>의 심의를 거쳐 <u>시장이</u> 결정한다.</p>	<p>제11조(기금의 용도) ①-----각 호-----</p> <p>-----</p> <p>-----</p> <p>1.~ 4. (현행과 같음)</p> <p>5. ----- <u>대전광역시장</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기금의 지원 결정)-----</p> <p>----- <u>심의위원회</u>-----</p> <p>----- <u>대전광역시장</u>-----</p>
<p>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출납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p>②기금운용관은 경제과학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14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경제과학국장</p> <p>2. 분임기금운용관 : 농업유통과장</p> <p>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p>
<p>제15조(수당 및 여비) <u>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수당 및 여비) <u>위촉위원</u>-----</p> <p>-----</p> <p>-----</p> <p>-----</p>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